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55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신현영·김승원·오영환

최혜영 • 이용우 • 인재근

이용선 · 이규민 · 강병원

허종식 · 정춘숙 · 전혜숙

김원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제공에는 직간접 경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유사한「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수료 등)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든 경비를 고려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경비를 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수수료 등) 질병관리청
	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
	• 관리에 든 경비를 고려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
	을 받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
	는 자에게 경비를 수수하여야
	<u>한다.</u>